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26,754,533	15,802,636
일반회계	520,984,917	15,629,548
특별회계	5,769,616	173,088
기타특별회계	5,769,616	173,088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390,607	101,718
주택사업특별회계	40,048	1,201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50,613	31,518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9,450	1,784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064,116	31,923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64,782	4,943

제 2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082,62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